

창업지원단 운영규정(4-3-13)

제정 : 2012. 8. 1

제1조(명칭 및 소재) 건양대학교 창업지원단(이하 “창업지원단” 이라 한다)은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건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창업지원단은 창업교육센터와 창업보육센터로 구성하고, 창업교육센터에는 창업교육팀, 창업동아리지원팀, 사업화지원팀을 두며, 창업보육센터에는 창업보육팀, Post-BI팀을 둔다.

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창업지원단은 단장을 두며,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수 있다.

③ 단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부단장,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의 센터장은 건양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장 과 부단장은 센터장을 겸할 수 있다.

⑤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의 센터장 임면, 조직구성 및 운영은 해당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)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강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2.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3. 창업교육패키지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4. 창업지원관련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5. 창업관련 자유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6. 비즈쿨고교 연계사업 운영
7. 창업경진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8.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9.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건양대학교 창업보육면적 운영 및 시설관리
10.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기술창업자 모집
11.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공창업지원
12.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
13. 창업관련 산·학·관 협력 사업

14.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5조(직무 및 업무분장) ①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단, 필요시 부단장 및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창업교육센터

가. 창업강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나.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다. 창업교육패키지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라. 창업지원관련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마. 창업관련 자유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바. 비즈쿨고교 연계사업 운영

사. 창업경진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아. 기타 창업교육과 관련된 사업

2. 창업보육센터

가.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
나.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건양대학교 창업보육면적 운영 및 시설관리

다.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기술창업자 모집

라.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공창업지원

마.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지원

바. 창업관련 산·학·관 협력 사업

사. 기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업

제6조(직원) ①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의 임면,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제7조(비밀유지의무) 창업지원단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 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, 창업보육센터장, 창업교육센터장을 포함하여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에는 단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창업지원단 사업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창업지원단의 세입·세출에 관한 사항
3. 기타 창업지원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창업지원단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창업지원단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

⑥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사업비)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남도, 중소기업청, 논산시청 창업지원금
2. 건양대학교 대응자금
3. 기타 재원

제10조(회계) ①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되, 세부사업별로 집행부서의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회계연도는 사업별로 정한다.

제11조(사업비의 집행) ①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각 센터의 사업별로 관리지침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② 사업비는 창업지원단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,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.

③ 사업비의 집행은 산학협력단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,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,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학협력단 지정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단장, 부단장, 센터장, 각 위원회의 위원,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창업지원단 각 집행부서는 창업지원단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.

⑦ 창업지원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, 건양대학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⑧ 창업지원단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센터에서 정하는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. 8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·수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